세종학당 업무위탁계약서

세종학당재단(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oo세종학당 운영업무 위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기간) ①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계약기간 동안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하여 oo세종학당을 운영한다.

<신규 세종학당의 경우>

② 세종학당 운영업무 위탁계약기간 및 사업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을’의 운영 결과에 따라 ‘갑’은 별도로 정한 기간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세종학당의 경우>

② 세종학당 운영업무 위탁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종학당 사업기간은 매년 대한민국 정부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oooo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 oooo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 oooo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제2조 (계약의 이행) ① ‘을’은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②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르되, 이에 정한 바가 없거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위탁금액 및 사업비) ① 위탁금액이란 사업기간마다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 상의 절차에 따라 ‘을’이 신청하고 ‘갑’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통보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② 사업비란 ‘갑’이 지원하는 지원금과 ‘을’의 자체 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세종학당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세종학당 운영을 위해 ‘갑’과 ‘을’이 투자하는 합산금액을 말한다.

제4조 (지원금 신청 및 확정 통보) ① ‘을’은 ‘갑’에게 업무위탁계약기간 중 매 사업연도별 지원금을 사업기간 시작일 최소 60일 전까지 신청하여 이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다음 이를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승인한다.

제5조 (지원금 지급) ① ‘을’은 운영기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사정으로 전용계좌 개설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세종학당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금을 ‘을’의 지원금 전용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갑’은 ‘을’과 협의하여 지원금 지급의 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업무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 총 사업비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시 확정된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이 축소 집행된 경우 ‘갑’은 총 예산의 변경 내역, 축소비율 등에 따라 차기 지원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1(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을’은 매년 ‘갑’의 지원금 확정 통보 후 지원금 교부받기 전까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당연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갑’은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보험은 연도별 ‘갑’의 지원금에 대해 각각 가입하며,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oooo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사업시간 시작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후 8개월까지)
· oooo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사업시간 시작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후 8개월까지)
· oooo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사업시간 시작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후 8개월까지)
③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필요시 지원금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④ 국내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할 경우, 현지 국책은행 등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착수)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세종학당 수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사정 등으로 세종학당 수업이 지연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이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수업 개시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간 내에 ‘을’이 수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갑’은 제16조제1항 다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기관의 변경) ‘을’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갑’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업 보고) ‘을’ 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사업에 대해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월별보고: 보고서 작성 해당 달의 다음 달 3일

나. 세종학당 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다. 세종학당 운영 자체 점검 보고: 사업기간 종료 후 1달 이내

라. 기타 보고: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

제9조 (사업 변경) ① ‘을’ 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지원금 및 수익금 사용의 변경

나. 사업계획의 조정

다. 세종학당장의 변경

② 제1항 이외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을’ 은 ‘갑’ 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원·운영요원의 변경 및 채용

나. 자부담금 사용계획의 변경

다. 교육과정의 변경

③ ‘을’ 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사업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갑’ 에게 이를 보고하고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계약에 명시된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집행) ① ‘을’ 은 ‘갑’ 이 확정·통보한 지원금에 맞추어 ‘을’ 이 최종 제출한 예산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자부담금, 수익금 등의 사업비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갑’ 의 지원금과 ‘을’ 의 자부담금 또는 수익금 간에는 전용할 수 없다.

④ ‘을’ 은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신청을 통해 ‘갑’ 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을’ 은 지원금의 비목 내 예산 금액의 40퍼센트(인건비 및 업무추진비의 경우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월의 월별 보고 시 ‘갑’ 에게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 내 비목, 세목의 신설 및 비목간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예산변경신청을 통해 ‘갑’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을’ 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균형 있게 집행하여 지원금 및 자부담금 미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금 처리) ① 수익금은 ‘을’ 의 세종학당 수강료 등을 포함하여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② ‘을’ 은 수익금을 지원금 및 자부담금과 별도의 독립 계좌로 관리하여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의 사용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 수익금의 발생내역과 사용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세종학당 운영 사업 목적 이외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세종학당의 지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시 수익금은 계약 상의 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을 고려하여 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잔여 수익금을 ‘갑’에 반납한다.

제12조 (자부담금) ① 자부담금은 제11조의 수익금 이외에 ‘을’이 세종학당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을’은 자부담금을 예산계획서 및 정산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사용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 정산) ① ‘을’은 제8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갑’에게 사업기간 내 집행한 사업비(지원금, 자부담금, 수익금 등 포함)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른다.
② 사업비 정산 보고 시,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정산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법령 또는 운영 기관의 규정에 의해 정산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법령에 따른 공증을 거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비를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한다.
④ ‘갑’은 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을’에게 반납금액과 해당 내역을 통보한다. 이 경우 ‘갑’은 환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을’은 제4항에 따른 ‘갑’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갑’이 요청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을’은 지원금 중에서 집행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원금의 이자, 환차익 등을 ‘갑’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납금액이 소액인 경우 송금에 따르는 수수료 지출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⑦ ‘갑’은 필요 시 현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회계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회계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는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보관 서류는 ‘갑’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사용)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정하는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에서는 표준교재(세종한국어, 세종한국어 회화, 세종한국문화)를 주교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평가 등) ① ‘갑’은 ‘을’의 사업에 대해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갑’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을’의 사업에 대해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의 체결 또는 지원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세종학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나. 그 밖에 ‘갑’이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을’이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사후 조치

가. ‘을’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세종학당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지원금과 그 지원금으로 발생한 환차익 및 이자 등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집행된 지원금과 그 지원금으로 발생한 환차익 및 이자 등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지원금으로 구입한 세종학당 기자재를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한 주변 세종학당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한국어 보급기관 등으로 인계하여 사용하게 한다.

다. ‘을’은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동안 ‘갑’이 별도 통보한 내용을 해당 세종학당의 학습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보안 준수 의무) ‘을’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계약의 내용과 이행 및 관련된 사항 중 보안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비밀유지 의무기간은 현지국가 법령, 기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사업참여의 제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규 참여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가. 「세종학당 운영규정」 및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나. ‘을’이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갑’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다. ‘갑’의 사업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주의’, ‘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지원금을 횡령한 경우

제20조(준거법) 계약의 효력과 해석 및 이행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를 통해 준거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불가항력조항) 계약이 전쟁, 혁명, 폭동, 파업이나 기타 노동분쟁, 화재, 홍수, 태풍, 정부의 제한조치 또는 '갑'과 '을'이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 지체된 때에는, '갑'과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그러한 원인이 제거된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한 관련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해결방법) 계약서와 관련하여 또는 계약서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다만,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계약이행지 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제23조 (계약서 작성 언어) ① 계약서는 한글본 및 영어본으로 작성한다. 다만,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을'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현지국가의 언어에 의한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본 계약서와 영어본 계약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나, 양자 간 각 조항에 관한 의미의 해석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글본에 따른다.

제24조(계약의 효력발생) 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확인하고 이견이 없을 때에는 공히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어 서명 · 날인한 계약서를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기관명/대표 :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송향근 (인)
	사업자등록번호 : 109-82-07761
	주 소 :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1, 12층
을	기관명/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